#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3

발의연월일: 2024. 1. 8.

발 의 자:최보윤·서천호·신동욱

유용원・김 건・박상웅

엄태영 · 김선교 · 배준영

서범수 · 김소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 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 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

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 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 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

조).

- 사.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 의 구청장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 회를 둠(안 제15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음(안 제19조).
- 파. 행정안정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함(안 20 조).

- 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 인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수립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누구든지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며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로운 삶을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품과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든 시설, 제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될 것
  - 2.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다양한 사용자를 아우르는 포괄성이 있을 것
  - 3. 모든 시설,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용 용이성이 있을 것
  - 4. 사용 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이 보장될 것
  - 5. 사용자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사회 통합성을 갖출 것
- 6. 기후, 인구구조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 제5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동 및 교통
  - 2. 공간 및 시설의 접근ㆍ이용
  - 3.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 4.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 5. 재해 · 재난 · 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관계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경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니 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

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 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4.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 6.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7.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유니버설디 자인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안내·제안의 처리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 개선
  -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유니버설디자인 및 노령, 아동, 성평등, 장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 제16조(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확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4조에 따른 원칙이 우수하게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시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제공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이하 "의무인증범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가 연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인증의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의무인증범위의 단계적 범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인증의 표시) ①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유니버설디 자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관련 실태조사
  -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국제기준의 도입
  - 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연수
  -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 3.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25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 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 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